

#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사유

가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한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 세목규정을 정비하고,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(안 제2조)

나.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공탁규정 삭제(안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6. 지방소득세

제15조 제목 “(공탁 등)”을 “(교부금전의 예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“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”를 “법 제72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세목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1.~5. (생략)            6. 지방소득세(소득분)            7. (생략)            ③~④ (생략)</p> <p>제15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          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          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            거나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           다만, 시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            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          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②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세목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-----.            1.~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6. 지방소득세           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법 제72조에 따라 --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&lt;단서삭제&gt;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         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          한다.</p>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세기본법」</p> <p>제5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대상, 과세표준, 세율,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2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세목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.

## 4. 작 성 자

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